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5182(본소), 2021가단6219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지장물철거등 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건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변 론 종 결 2022. 9. 13.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강원 횡성군 D 임야 436㎡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9~16, 3, 17~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54㎡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강원 횡성군 E 답 26㎡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18~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강원 횡성군 F 답 129㎡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을 철거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B에게 7,137원과 2022. 6. 1.부터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통행권 행사 종료일까지 월 8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6,969,000원, 피고 C는 1,969,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8. 26.자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1.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190,316원 및 2022. 6.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통행권 행사 종료일까지 월 2,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임야 436㎡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택의 앞 마당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차량이나 경운기를 주차하거나, 자재를 쌓아두거나 수확한 작물을 널어서 말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위 토지에 접한 E 답 26㎡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택 앞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피고들 주택 인근에 위치한 G 대 793㎡, H 대 780㎡, I 전 2,919㎡(이하 통틀어 ‘원고 농지’라 약칭한다)를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다.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과 원고 농지 사이에는 국유의 J 도로 2,188㎡가 위치하고 있어, 수십 년 전에는 이 국유지를 통해서 원고 농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 잡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실질적으로 도로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하였고,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인 횡성군이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한 이 국유지를 통해서 원고 농지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7년경 원고 농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에 포장된 곳을 통행하여 원고 농지로 화물차량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출입시켜 원고 농지를 경작하였다. 현재 원고 농지는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차량이나 농기계를 출입시킬 수 없는, 실질적으로 맹지(盲地)인 상황이다.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폭 3m의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들 주택 앞 마당의 외곽 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1) D 임야 436㎡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9~16, 3, 17~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4㎡ 및 (2) E 답 26㎡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18~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이다(이하 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한편, 원고 농지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K 답 1,884㎡, L 답 493㎡, F 답 129㎡(이하 통틀어 ‘피고들 농지’라 한다)에 접해 있는데, 원고 농지의 높이가 피고들 농지보다 1.5m 가량 높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원고 농지에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가 피고들 농지로 무너져 내렸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제때 원상복구를 하지고 않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 농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피고들 농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지하에 임의로 오폐수관을 매설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구체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피고들은 2019.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경운기를 주차해 두거나 나무,

스티로폼 판넬 등 물건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고(원주지원 2021. 8. 11.자 2021카합1107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경운기를 치웠고 더 이상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15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트럭이나 농기계를 원고 농지로 출입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의 통행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한다.
- (2) 원고는 지난 수년간 피고 B의 통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3) 원고 농지의 높이가 피고들 농지보다 1.5m 가량 높아서 매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원고 농지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경계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에 담을 쌓을 필요가 있으며, 그 설치비용(견적금액) 7,876,000원은 민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양측 토지의 소유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960,000원(= 7,876,000원 × 하단 토지 소유자의 부담분 1/2 × 피고들의 공유지분비율 각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행위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 (1)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과 원고 농지 사이에 있는 국유지는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로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인 횡성군이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원고 농지로 트럭이나 농기계가 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차량, 농기계 출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피고들의 마당 이용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의 외곽으로서 폭 3m로 제한하여 측량한 결과가 이 사건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장래에 횡성군이 위 국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통행방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농지는 비록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형상과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에 접하고 있었으며,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들 주택의 앞 마당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자신들 주택의 앞 마당에 경운기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에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피고들의 통행방해행위가 개시된 직후에 곧바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를 하여 자신의 손해 확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법원의 1차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들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담장 내지 석축 설치비용 부담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며(제2항), 이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토지 사이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것은 각자의 소유권 등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원고는 비용분담을 정한 민법 제237조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 농지와 피고들 농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담’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농지와 피고들 농지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 형태로 되어 있어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다가, 원고가 설치비용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호증(견적서)에는 공사의 내용이 “전석쌓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농지와 피고들 농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양측 토지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에 지대가 높은 원고 농지에 있는 토사가 아래쪽에 있는 피고들 농지 쪽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담’이 아니라 ‘석축’이나 ‘옹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석축이나 옹벽은 상단 토지의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법령이나 관습,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단 토지의 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단 토지의 부속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농지에 지하수나 빗물이 적절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로 등 시설을 적절히 설치한다면 토사 붕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석축이나 옹벽 설치에 협력하거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237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비용분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들 농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지하에 임의로 매설한 오폐수관을 즉시 철거할 것을 청구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들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한 기간으로서 반소 제기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아니한) 2012. 6. 1.부터 (피고들의 통행방해행위 개시 전인) 2019. 3. 31.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피고들이 통행방해행위를 중단한 이후인) 2021. 9. 1.부터 202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액 합계 190,316원 및 2022. 6. 1.부터 장래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종료일까지 월 2,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오폐수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농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지하에 오폐수관을 임의로 매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손실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 제2항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횡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참조).

(2) 원고가 1997년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들 집 앞마당을 통행하여 원고의 차량이나 농기계를 원고 농지로 출입시켰으나, 이용기간은 농사철로 한정되고 그 이용횟수는 1년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비어 있는 피고들의 마당을 사실상 통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통행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나 경운기를 주차하지 말라거나 자재를 쌓아두거나 작물을 널어두지 말라고 요구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사실상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9. 3.경 이전의 통행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나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이 판결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확인받고 피고들의 통행방해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차량, 농기계가 이 사건 토지를 언제 통행할지를 미리 정하거나 예상할 수 없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차량, 농기계의 통행을 위하여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제한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방법 제한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차량, 농기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마당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법원의 임료감정 축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료액은 월 2,640원(= 월 2,760원 $\times$ 66㎡/69㎡)이고,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의 임료액은 월 2,805원(= 월 2,933원 $\times$ 66㎡/69㎡,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감정인은 피고들의 감정신청사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9㎡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 및 임료액을 감정하였으나, 원고가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면적을 이 사건 토지 합계 66㎡로 한정하였으므로, 임료감정 결과를 면적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2023. 6. 1. 이후의 임료액은 그 직전의 기간과 같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5) 이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는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손해보상청구를 인용하되, 원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임료감정액의 30%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이 사건 토지 중 45㎡는 피고 B의 단독 소유이고, 12㎡는 피고들의 각 1/2지분씩 공유인데, 피고들은 청구금액 산정 및 집행의 편의를 위해 피고들 공유지에 관한 손해보상금도 공유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피고 B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공유지에 관한 손해보상청구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손해보상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021. 9. 1.부터 2022. 5. 31.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의 보상액으로 7,137원(= 월 2,640원 $\times$ 9개월 $\times$ 30%)과 2022. 6. 1.부터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종료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액으로 월 841원(= 월 2,805원 $\times$ 30%,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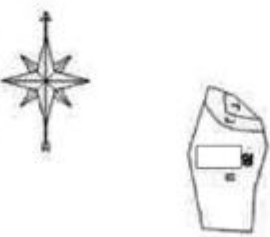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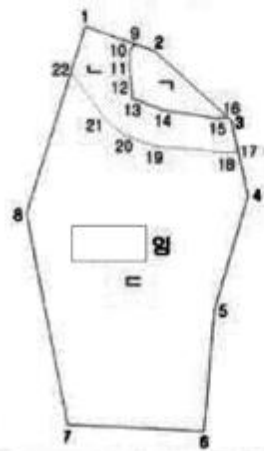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분쟁의 경위, 승패비율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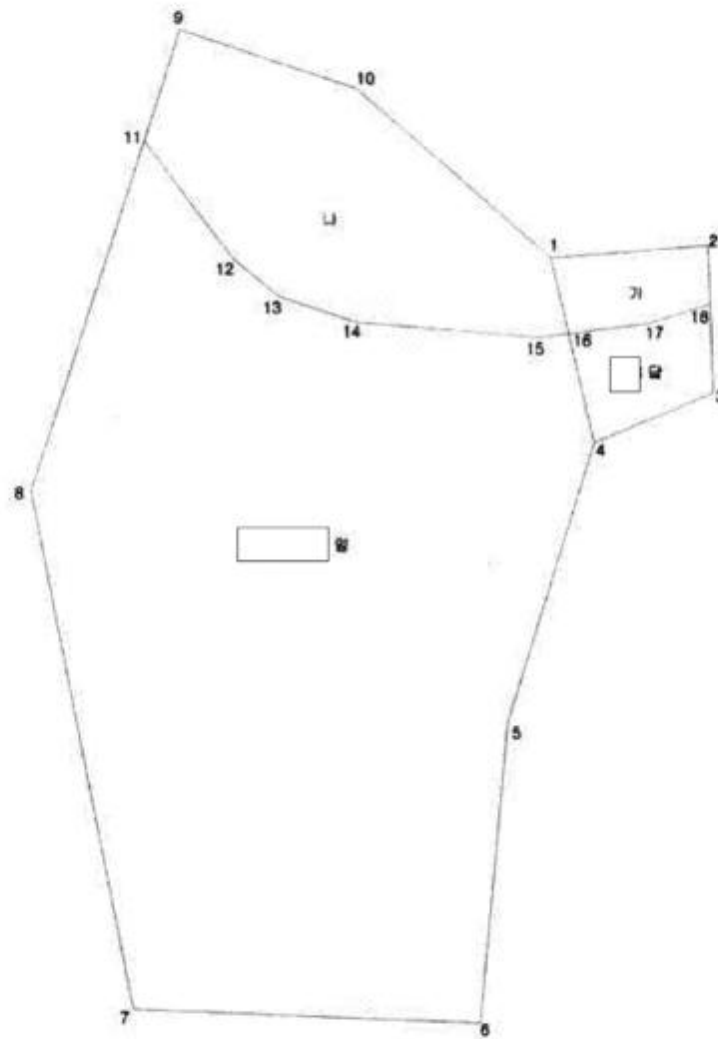
별지1

감 정 도

토 지 소 재	강원도 1 필	속 칙	$\frac{1}{1200}$						
사건번호 : 2021가단55182 소유권이전등기		부 호 도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범 례</th> </tr>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목도선</td> </tr>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외곽인자점선</td> </tr> </table>		범 례		—	지목도선	—	외곽인자점선		
범 례									
—	지목도선								
—	외곽인자점선								
토 지									
지 번	지 목	부 호	내 용	면적(㎡)	비 고				
	임	ㄱ	9,2,16~10,9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면적.	24	9~13 : 외곽인자점선 13~16 : 보합도도선 17~22 : 외곽인자점선				
		ㄴ	1,9~16,3,17~22,1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면적.	54					
		ㄷ	22~17,4~8,22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면적.	358					

별지2

감 정 도 (참고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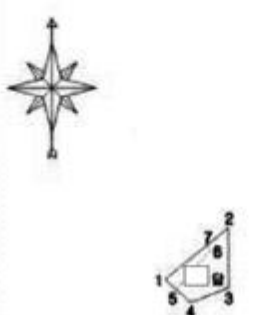


별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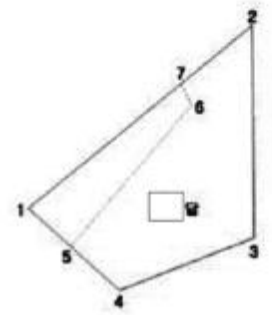
감 정 도

토 지 소 재	강원도	필	속 칙	$\frac{1}{1200}$
---------	--	---	-----	------------------

사건번호 : 2021가단55182 소유권이전등기



참 고 도



범 례	
	지적도선
	오·폐수관

토 지					
지 번	지 역	부 호	내 용	면적(㎡)	비 고
	담		1,7,2,3,4,5,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면적	129	원형측량(선) 오·폐수관 측정

